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0

발의연월일: 2024. 7. 15.

발 의 자:이종배·유용원·최은석

송석준 · 김성원 · 박대출

강승규 · 김미애 · 이종욱

이양수 · 김용태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의무휴업일에는 대형마트 등에서 운영하는 온 라인 영업 역시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임.

최근 유통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소매시장 및 소비자 트랜드가 오 프라인유통에서 온라인유통으로 급격히 넘어가고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심지어 국경의 제한조차 없는 온라인쇼핑은 이미 보편화된 쇼핑채널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에 온라인쇼핑 영업까지 제한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한 영업규제가 사실상 중소유통업을 보

호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온라인쇼핑 영업을 규제해도 그 반사이익이 중소유통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다른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소매업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어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온라인쇼핑 규제는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일 제한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단서).

법률 제 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규모점포등"을 "대규모점 포등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 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전자상거래나 통 신판매를 하는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하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 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 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 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 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 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 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 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대규모점포등과 「전자상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대형마트

	와 준대규모점포가 통신판매업	
	으로 신고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